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9. 18.  
총무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8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1. 9. 1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정 상 택

#### 가. 제안이유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참전경찰 및 사회의 보호가 요청되는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숭고한 애국정신의 이념을 구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증진에 기여하고자하며,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제증명발급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면서, 별표 제2호의 수수료 종목들과 건재순에 따라 정리함. (안 제2조 관련 별표)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20,000원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 1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각 20,000원

-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및 등록신청 : 각 3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 : 각 10,000원

○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

- 구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및 구유재산 매수신청 : 1건당 550원에서 950원

- 입찰참가신청 : 3,000원에서 5,000원으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43종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감면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등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군·경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까지도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석유판매업 등록 외 11종목의 수수료를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신설하고, 현행 수수료종목을 해당 부서 과 건재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현행 규정에는 1건당 3,000원인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울시 권고안대로 규정하는 등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지난 9월 10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는 우리 구의회에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구 분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국가유공자및유가족	장애인	계
인 원	1,600명	500명	1,684명	6,416명	10,200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9.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참전경찰 및 사회의 보호가 요청되는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숭고한 애국정신의 이념을 구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1)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면서, 별표 제2호의 수수료 종목을 과 건재순에 따라 정리함 (안 제2조 관련 별표)

-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20,000원
-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 10,000원
-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각 20,000원

(4)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및 등록신청 : 각 30,000원

(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  
특사항 변경신청 및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 : 각 10,000원

다.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

(1) 구유재산 대부(계속대부)신청 및 구유재산 매수신청

- 1건당 550원에서 950원

(2) 입찰참가신청 : 3,000원에서 5,000원으로

### 3. 참고사항

가. 근거법규

(1)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128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조

(3)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2000.1.28 법률 제6258호) 제4조

(4) 장애인복지법(2001.4.7 법률 제6460호) 제27조

(5) 석유사업법(2000.1.28 법률 제6228호) 제31조

(6) 석유사업법시행규칙(2001.1.22 산업자원부령 제118호) 제25조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5.24 법률 제6473호) 제  
27조, 제28조, 제31조 및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또는 승인 : 수수료의 신설 및 변경관련 해당부서와 협의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01.6.30~7.20, 2001.7.16~8.5)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본인의 증명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의 제1호중 “(43종)”을 “(42종)”으로 하고, 제1호중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자.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제3조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9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8)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1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14)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1건	550원	
(15) 토지 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16) 도로·하천부지 점용 (지하도, 지하상 가, 노상주차장) 허가	1건	600원	
(17)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18)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1건	50,000원	
(19)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30,000원	
(20)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b>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b>			
(1) 인감(신규, 변경, 개인)신고	1건	250원	
(2)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1건	30,000원	
(3)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u>구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u>	1건	950원	
(5) <u>구유재산 매수신청</u>	1건	950원	
(6) <u>입찰참가 신청</u>	1건	5,000원	
(7) 수의계약	100만원이상	3,000원	
(8)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원	
(9)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10)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1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2) 법인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원	
(13) 부동산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원	
(14)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15)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16)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1건	20,000원	
(17)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18) 차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1건	2,000원	
(19)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u>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6조(수수료의 감면)</b>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u></p> <p>3. (생략)</p>	<p><b>제1조(목적)</b>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b>제6조(수수료의 감면)</b> ① 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에 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본인의 증명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아.(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r> <tr> <td>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관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    (1) 자동차 제증명</td> <td>1건</td> <td>1,000원</td> <td></td> </tr> <tr> <td>    (2)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 신청</td> <td>1건</td> <td>1,000원</td> <td></td> </tr> <tr> <td>차.~하.(생략)</td> <td>(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26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d></td> </tr> <tr> <td>    (1) 도로·하천부지 점     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허가</td> <td>1건</td> <td>600원</td> <td></td> </tr> <tr> <td>    (2) 공유수면 점용허가</td> <td>1건</td> <td>550원</td> <td></td> </tr> <tr> <td>    (3)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신청</td> <td>1건</td> <td>550원</td> <td></td> </tr> <tr> <td>    (4) 사도개설허가 및 축     조허가 신청</td> <td>1건</td> <td>550원</td> <td></td> </tr> <tr> <td>    (5) 토지형질변경(택지조     성) 행위 허가신청</td> <td>1건</td> <td>2,000원</td> <td></td> </tr> <tr> <td>    (6)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td> <td>1건</td> <td>50,000원</td> <td></td> </tr> <tr> <td>    (7)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요양병원)</td> <td>1건</td> <td>30,000원</td> <td></td> </tr> <tr> <td>    (8)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등)</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아.(생략)	(생략)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2)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 신청	1건	1,000원		차.~하.(생략)	(생략)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도로·하천부지 점 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허가	1건	600원		(2)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3)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신청	1건	550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 조허가 신청	1건	550원		(5) 토지형질변경(택지조 성) 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6)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1건	50,000원		(7)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요양병원)	1건	30,000원		(8)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등)	1건	10,000원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42종)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아.(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자. 자동차 제증명</td> <td>1건</td> <td>1,000원</td> <td></td> </tr> <tr> <td>차.~하.(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39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액</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d></td> </tr> <tr> <td>    (1) 공연장업 등록신청</td> <td>1건</td> <td>50,000원</td> <td></td> </tr> <tr> <td>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td> <td>1건</td> <td>25,000원</td> <td></td> </tr> <tr> <td>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td> <td>1건</td> <td>20,000원</td> <td></td> </tr> <tr> <td>    (4) 일반개인장업 등록신청</td> <td>1건</td> <td>20,000원</td> <td></td> </tr> <tr> <td>    (5)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td> <td>1건</td> <td>20,000원</td> <td></td> </tr> <tr> <td>    (6)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td> <td>1건</td> <td>30,000원</td> <td></td> </tr> <tr> <td>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r> <td>    (8) 일반개인장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r> <td>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     항 변경신청</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r> <td>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아.(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차.~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일반개인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8) 일반개인장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 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아.(생략)	(생략)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2)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 신청	1건	1,000원																																																																																																																															
차.~하.(생략)	(생략)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도로·하천부지 점 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허가	1건	600원																																																																																																																															
(2)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3)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신청	1건	550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 조허가 신청	1건	550원																																																																																																																															
(5) 토지형질변경(택지조 성) 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6)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1건	50,000원																																																																																																																															
(7)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요양병원)	1건	30,000원																																																																																																																															
(8)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등)	1건	10,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아.(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차.~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일반개인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8) 일반개인장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 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현행				개정안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9)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1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10)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건	550원	
				(14) 사도 개설허가 및 측조허가 신청	1건	550원	
				(15) 토지 형질변경(택지조설) 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16) 도로·하천부지 점유(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허가	1건	600원	
				(17)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18)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1건	50,000원	
				(19)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30,000원	
				(20)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등)	1건	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시유재산 대부(계속 대부) 신청	1건	550원		(1) 인감(신규, 변경, 개인)신고	1건	250원	
(2) 시유재산 매수신청	1건	550원		(2) 복합용도·제공업 신고	1건	30,000원	
(3)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원		(3) 복합용도·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4) 구유재산 대부(계속 대부)신청	1건	950원	
(5) 시영주택(중·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5) 구유재산 매수신청	1건	950원	
				(6) 인찰참가 신청	1건	5,000원	

현행				개정안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6) 인감(신규, 변경, 개인) 신고	1건	250원		(7) 수의계약	100만 원이상	3,000원	
(7) 입찰참가 신청	1건	3,000원		(8) 사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원	
(8) 수의계약	100만 원이상	3,000원		(9) 시영주택(택지) 앞 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9)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 원, 조산소)	1건	20,000원		(10) 시영주택(중·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10)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1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 자의 부동산중개사무 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1) 치과기공소 인정신 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2,000원		(12) 법인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 설등록 신청	1건	20,000원	
(12)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	1건	10,000원		(1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원	
(13) 공인중개사인 중개 업자의 부동산중개사 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4) 부동산중개업분사무 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14) 법인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원		(15) 전설기계 저장등록 (말소) 신청	1건	1,000원	
(1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원		(16)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 의원, 조산소)	1건	20,000원	
(16) 부동산중개업분사무 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17)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장소이전, 구조 등)	1건	10,000원	
				(18)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2,000원	
				(19) 안경업소개설등록 신 청 및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